
2026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 지침

- ◆ 2026년 운영지침 '주요' 개정 사항은 '파란색' 표기
- ◆ '3. 개설 가능 훈련'은 2026년 전체 개정 됨

목 차

1. 총칙	1
2. 주요 지원 내용	1
3. 개설 가능 훈련	5
4. 유의사항	9
5. 기타 지원 사항	13
6. 적용 기준	15

〈참고〉

1. 각종 양식 및 참고 자료	16
2. 훈련비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및 예시	17
3.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20
4. NCS 훈련수준	27

□ 추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등

□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본 지침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적용함

가. ‘훈련기관’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등 지원

- (참여 장벽 완화)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참여 허용
 - 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기관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참여 불가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훈련비 지원)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직종’의 경우 NCS 직종별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대상산업·직종’의 경우 NCS 직종별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

*적용시점: 2026. 1. 1. 이후 승인된 훈련과정부터 적용

<’26년 산대특 (훈련)구분별 지원 체계*>

과정 구분	AI 분야	훈련비**	자기부담금		차감액	훈련수당
(단기) AI 전환 대응	AI 노동자 양성 과정	지원단가의 130%	최대 10% (횟수 무관)		100만원 까지	-
(일반) AI 전환 대응			1회	최대 10%	200만원 까지	(장:140h~)20만원 (특:350h~)10/20/ 30만원
			2회 부터	최대 55%		
(단기) 육성산업·직종	정보통신산업 외 타 산업의 AI 융복합 커리큘럼	지원단가의 130%	최대 10% (횟수 무관)		100만원 까지	-
(일반) 육성산업·직종			1회	최대 10%	200만원 까지	(장:140h~)20만원 (특:350h~)10/20/ 30만원
			2회 부터	최대 55%		
(단기) 지원대상산업·직종	정보통신산업의 AI 이해·활용 커리큘럼	지원단가의 100%	최대 10% (횟수 무관)		100만원 까지	-
(일반) 지원대상산업·직종			1회	최대 10%	200만원 까지	(장:140h~)20만원
			2회 부터	최대 55%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받는 훈련과정은 주말 훈련시 훈련비 120% 지원(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8조)
- 운영기관에서 훈련비 지원단가 기본우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과정 등에 대해서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적용*(훈련비 심사 및 정산 없음)

*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적용과정

- ① 운영총괄기관이 보급한 훈련 과정(ISC 등이 개발한 범용 훈련과정)
- ② 지자체 협업 과정(▲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소속 재직자 또는 구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한 과정
▲지자체 기본계획, 조례 등에 명시된 지역 중점 사업으로 지자체가 고용센터, 운영기관 등에 명시적으로 훈련공급을 요청한 과정<회의록, 공문 등 증빙자료 필요>)

- 운영기관이 선정한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고급·특수 훈련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훈련비 심사 및 정산 필요)

○ (NCS 필수 적용 생략) 훈련과정 심사 시 NCS 훈련기준 적용 제외

- NCS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적용, 시설·장비기준 필수 적용되지 않음(단, 훈련과정 개발시 해당 NCS 시간·장비·시설 기준 참고할 것)

나.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훈련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계좌 유효기간 내 최초 참여 시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2회 참여 시부터는 일반과정(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및 단기과정(훈련시간 140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

< 일반과정 vs 단기과정 훈련생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		
구분	일반과정	단기과정
최초 참여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최대 200만원까지 계좌차감 * 자기부담금은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하단 표 참조)'에 따라 부담	수강 횟수와 무관하게 계좌잔액 범위 내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계좌차감 * 자기부담금은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하단 표 참조)'에 따라 부담
2회 이상 참여	2회차 수강 시부터는 계좌잔액 범위 내 훈련비의 45% 이상 지원*하며, 계좌잔액 범위 내 차감 * 자기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부담	
특례	해당없음	①-2 (AI 전환 대응 과정>AI 전문인력 양성 과정) 중 단기과정에 한해,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예외적 지원 허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제1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효기간(5년) 내 총 3회(횟수 차감 방식) 지원, 자부담은 기존 카드발급자와 동일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훈련비 구간	300 이하	3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
자기부담금 금액	10%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므로, 계좌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수강 시부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에 따름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3항)

-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단기과정 특례) 다만, 원칙적으로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과정에 한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3항), 단기과정 수강 시,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횟수에 무관하게 아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훈련비 지원 적용 사례 >

예1) '25년에 실업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 '26년에 산대특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더라도,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10% 부과

예2) '25년에 실업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 '26년에 산대특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고,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최대 55%까지 부과

예3) '25년에 재직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200만원 미만 차감한 경우 포함), '26년에 산대특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더라도,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10% 부과

예4) '25년에 재직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200만원 미만 차감한 경우 포함), '26년에 산대특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고,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최대 55%까지 부과

☞ '26년 이전까지 (재직자 혹은 실업자를 막론하고) 산대특 훈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6년 산대특 단기과정 신청하는 경우만 10% 자기부담금 부과, 이외 경우는 최대 55% 자기부담금 부과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AI 전환 대응·지원대상산업 NCS직종에 해당하는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 과정
- ‘가. 훈련분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나. 훈련유형’ 중 하나를 선택

가. 훈련분야(택1)	→	나. 훈련유형(택1)
①AI 전환 대응 과정(단기/일반) ※지원단가: NCS 130%		①고용유지훈련 ※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 (재직자 계좌제 기준)
②지원대상산업·직종(단기/일반) ※지원단가: NCS 100%		②전직 및 취·창업훈련 ※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 (실업자 계좌제 기준)

가. 훈련분야(①,② 중 택 1)

① (AI 전환 대응 과정) 공통 직종 (멀티미디어¹⁾, 디지털디자인²⁾, 출판³⁾)

*1) 영상콘텐츠 제작자, 2) UI/UX 디자이너, 3) 출판물 제작자

구분		NCS 소분류 기준 직종	
훈련구분	공통직종	분류번호	직종명
AI 전환 대응 과정	멀티미디어	080201	디자인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080304	영상제작
	디지털디자인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출판	220101	출판

② (지원대상산업·직종) ' 25. 1~12. 충남지역 대량고용 변동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산업 5개 및 18개 NCS 직종 선정

구분		NCS 소분류 기준 직종	
훈련구분	산업	분류번호	직종명
지원대상 산업·직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	140302	건축시공
		140704	적재기계운전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107	전기공사
	화력발전업(35113)	050201	소방
		190101	발전설비설계
		190102	발전설비운영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150102	기계설계
		150201	절삭가공
		150202	특수가공
		150301	기계조립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401	기계품질관리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1)	150101	설계기획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60105	용접
		190108	전기자동제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170401	플라스틱

나. 훈련유형(①~② 중 택1)

①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이며,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을 준수

**성과활용 지표: 모집률,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②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이며, 실업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을 준수

**성과활용 지표: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전직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통합심사)**

구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실업자 계좌제: <u>10일 이상, 40시간 이상</u> • 실업자 국가: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 • 재직자 계좌제: <u>2일 이상, 16시간 이상</u> • 사업주 위탁: 4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 • 실업자 국가: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u>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u>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실습장	[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기준(권고)]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
기타	[기타사항]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훈련과정의 성과 활용 부문**

- ① '23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운영기관이 훈련과정 심사를 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
- ②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역량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

*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참여 배제

○ (훈련방법 제한)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훈련실시

○ (훈련과정 차별화 필요) 훈련과정은 반드시 기존 통합심사과정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훈련과정명은 아래 형식에 맞추어 신청

- [산대특]훈련과정명 * [산대특]과 훈련과정명은 **띄어쓰지 않음**

- [AI Worker]훈련과정명 * [AI Worker]와 훈련과정명은 **띄어쓰지 않음**

○ (중복훈련 제한) 통합심사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과정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제한됨

- 심사 시 신청한 훈련기관이 기존에 운영중인 훈련과정 간 중복 여부(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목표, 커리큘럼, 교재 등 종합판단)를 반드시 확인하며, 중복 과정은 부적정 판정

- 특히, 이전(최근 1년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합심사에서 훈련내용 방법 등이 미흡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그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은 부적정 판정

* 예: 훈련기관 A가 개설하려는 훈련과정 B와 관련하여

① 훈련기관 A가 통합심사를 거쳐 훈련과정 B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훈련물량 증대 목적**),

② 훈련기관 A가 이전 통합심사에 훈련과정 B의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판단을 받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훈련심사 우회 목적**)을 의미

○ (**공급과잉직종 예외적 공급 기준 강화**) **공급과잉직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신기술 및 AI 융합 과정에 한해서는 선정** 할 수 있으나, 훈련계획서 등에 산대특 훈련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타당한 사유 명시 반드시 필요** * (26년의 경우, NCS 소분류 기준 10개 직종) 일반사무, 식음료서비스, 회계, 음식조리, 제과제빵·떡제조, 임상지원, 이·미용서비스, 적제기계운전, 전기공사, 토공기계운전)

- 지역 내 국기 훈련, KDT 및 일반직종 훈련 등 다수 훈련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훈련과정 등 산대특 훈련 사업으로 공급할 차별점이 없는 경우 승인 불가

- (실시가능 직종) 훈련기관은 유형에 따라 실시 가능한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예상 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NCS직종 편성) NCS 직종은 훈련과정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이 해당되며,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 가장 유사·적당한 NCS직종 편성 필요
- (훈련가능인원 제한) 훈련가능인원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내에 목표하는 훈련인원이며, 훈련기관의 역량, 기존 훈련실적 등을 참고하여 심사 시 훈련가능인원을 조정 및 축소할 수 있음
 - 과정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훈련가능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자위와 협의 및 고용센터 승인 필요
 - 훈련가능인원 내에 회차 추가는 자율적 운영

* 훈련정원 20명, 훈련가능인원 100명 승인됐을 시 10명씩 10회차 운영 가능하며 훈련가능인원 미달성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 인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훈련비 심사) ‘AI 전환 대응 과정’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중 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과정은 반드시 훈련비 심사가 이뤄지며, 회계정산 대상이 됨(회계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훈련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수’ 기준으로 지급된 훈련비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비목별 별도 정산 후 필요시 환수

* 훈련비 심사를 받은 훈련과정의 정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정산계획 별도 시달 예정

○ (훈련과정 인정제한) 직무능력향상 등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인정제한

* <예시> ① “골프장 캐디 양성과정”, “헬스트레이너 양성과정” 등은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②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자격과정 등은 자격시험과 관련된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등

※ 인정제한분야 유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5항)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예)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예)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단,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준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예)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 훈련과정 관련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개설할 수 있음

* 재직자는 훈련 참여시 훈련비의 50% 국비 지원, 실업자는 미지원

- 따라서, 외국어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반적인 훈련과정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하여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 제한

○ (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자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각 호)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나.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다.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인 사람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용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삭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 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재인정 특례>

- (대상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승인 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 인원의 60%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1년) 및 훈련가능인원(기존 한도 내에서)을 재부여 하는 재인정 특례 요청 가능
- (지원단가) 재인정 특례 시 훈련비 지원단가는 운영기관 최초 승인 시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 (절차) 운영기관은 재인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훈련과정이라도 특별 분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해당 과정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에 운영기관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의 재부여에 대하여 신청
 - ② 운영기관은 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적정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고용24 시스템으로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 공문 발송
 - ③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

< 훈련가능 인원 초과 실시 기준>

-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률이 높아 훈련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 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훈련 운영을 위해 인정된 훈련과정별 훈련가능인원의 150% 내에서는 훈련가능인원의 규모 변경 없이 운영이 가능('22.10월~)하였으나, ' 26년 이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 실시가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 (AI 전환 대응 과정, 육성산업·직종 과정) 운영기관(RSC)의 초과 실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산업·직종 과정) 운영총괄기관의 초과 실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 운영기관(RSC)은 훈련기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인원의 60% 이상 훈련을 실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 결과 및 초과 실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 ** 운영기관(RSC)은 훈련기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인원의 80% 이상 훈련을 실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 결과 및 초과 실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총괄기관에 공문으로 초과 실시 승인을 요청하고, 운영총괄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승인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20만원* 등)
 - * 물가상승 등 반영하여 11.6→20만원으로 현실화(KDT·산대특 한정)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특별훈련수당>

-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 훈련 과정(350시간 이상)에 대하여 참여 부담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려금(월 20만원) 이외에 특별훈련수당을 지역별 차등하여 추가 지원(월 수도권10만원, 비수도권20만원 인구감소지역*30만원)
 -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4.2.27.)에 따름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개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AI 전환 대응 과정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의 특별훈련수당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5천원·1만원·1만5천원' 방식으로 산정)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6

적용 기준

- (경과 규정) 본 지침은 ' 26. 1. 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하되, '25년 인정된 훈련과정 및 재인정특례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단가, 승인인원 초과 실시 기준 강화 규정은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정시작 유효년도 당시의 기준에 따름
- AI 전환 대응 과정 및 단기과정 신설, 훈련 구분별(고용24시스템 상 ' 훈련과정상세유형 ') 훈련비 지원단가(100% 혹은 130%), 자부담 부과, 훈련수당 조정 내용 등은 '26. 1. 1.부터 전면 적용

※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①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으로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② 또는 **지역별·산업별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승인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일 것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번	요건	세부 내용
①	훈련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훈련비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이상)	강사료	내부 강사료	▶ 내부강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 ▶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단, 여비를 포함한 총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 초과 불가	▶ 투입강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투입강사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월급여액 또는 연봉 포함) ▶ 기관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 일반강사와 특강강사로 구분하되 특강강사는 10시간 초과 불가 ▶ 특강강사 강사료는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단가산정 ▶ 일반강사의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강사여비를 포함하여 시간당 7만원 초과 불가 ▶ 외부강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등급 강사를 위촉하며 1인이 등급이 낮을 경우 강사료는 낮은 등급으로 책정됨	▶ 외부강사료 지급 규정 ▶ 외부강사 위촉계약서 (시간당 금액 명시)
	교재비	교재 구입비	▶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 2개업체 이상 견적서(구입 단가 명시)
		교재 인쇄비	▶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제작 및 인쇄비용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실습비	실습 재료비	▶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 제외 ▶ 고가품이거나 과다책정, 자산 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 2개업체 이상 견적서(물품명 명시)
		현장 실습비	▶ 훈련생 현장실습에 발생하는 비용 ▶ 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현장실습비 산출내역서 ▶ 현장실습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시설비	시설 임차비	▶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보증금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 내부시설 (월임차료/2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임차면적) ▶ 외부시설 외부에서 강의개설시 강의장 임대 실비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 호텔 등 과도한 임대 불가하며,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강의시설 임대료는 지원제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설감가 상각비	▶ 기관소유의 훈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해상시설감각비/36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 훈련시설의 취득금액 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계약서, 세무계산서 등)
	장비비	장비 임차비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장비 감가 상각비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 기관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장비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60X장비사용일수/30)	▶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장비유지 보수비	▶ 훈련기간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최소금액 (월평균발생액/30X훈련일수)	▶ 유지보수 산정 내역서 ▶ 훈련장비관리대장
	기타 훈련 비용	재해 보험료	▶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X인당보험료)	▶ 보험 가입 견적서
		기타 훈련비용	▶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성 입증하는 경우 지원	▶ 기타훈련비용 산출내역서 ▶ 관련 입증서류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간접비 (35%이내)	인건비	인건비	▶ 내부참여인력(행정 및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 훈련과정별 참여율은 50% 한도로 하며 월평균 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 한도 ▶ 훈련과정별로 2인 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50%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인건비×훈련시간/1600×참여율)	▶ 투입인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투입인력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 2개 과정 이상 참여 시 과정별 참여율 내역
	홍보비	홍보비	▶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으로 실비로 산정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인정	▶ 홍보비 산출내역서 (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운영 지원비	출장비	▶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 인정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포함(내부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 ▶ 내부규정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산정	▶ 훈련기관 출장비 지급규정
		공공요금	▶ 훈련기관에서 발생된 전년도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월평균공공요금/1600×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훈련시간) ▶ 공공요금이 과장별로 구분되어 측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공공요금 발생액 지원 ▶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산정기준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 공공요금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 직전연도 해당훈련시설의 월별공공요금 부과내역서 ▶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사무용품	▶ 훈련과정에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등을 실비로 산정 ▶ 자산 취득 및 입차비용은 불인정	▶ 사무용품비 세부 산출내역
		회의비	▶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 인쇄비 등 실비로 산정 ▶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전년도 회의비 지출내역 및 회의록 없을 경우 회의계획(안) 및 산출내역서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비용	▶ 상기 간접비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0% 이내로 산정함	▶ 기타간접비용 산정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지원기준은 통합심사 자료집 준용

- 특강강사료 기준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시간당 한도액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격	▶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 임원급 ▶ 기업체 사장급 이상	▶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부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 대학 부총장급 이상	▶ 정교수급 이상	▶ 부교수급 이상	▶ 조교수급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박사취득 후 즉시
	▶ 석사취득 후 17년	▶ 석사취득 후 12년	▶ 석사취득 후 8년	▶ 석사취득 후 4년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2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20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1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10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25년(27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20년(22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15년(17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10년(12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3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5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15년

*특강강사료 지원기준은 통합심사 자료집 준용

[훈련비 산출내역 작성 예시]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세부내역	단가	수량	기타	
강사료	소 계					36,109,375
	내부강사료	최홍련 외 2명	29,766	400	150%	17,859,375
	외부강사료	홍장미 외 2명	45,625	400		18,250,000
교재비	소 계					1,900,000
	교재구입비	교재 A,B,C	19,375	80		1,550,000
	교재인쇄비	교재 가,나,다	4,375	80		350,000
실습비	소 계					8,410,000
	실습재료비	재료 A,B,C	19,167	60		1,150,000
	현장실습비	차량임차비, 식비, 위탁교육비				7,260,000
시설비	소 계					6,150,000
	시설임차비	시설 A,B,C				1,600,000
	시설감가상각비	시설 가,나,다				4,550,000
장비비	소 계					5,175,000
	장비임차비 및 소프트웨어사용료	장비 A	70,000	30	2개월	4,200,000
	장비감가상각비	장비 A,B,C				400,000
	장비유지보수비	장비 가,나				575,000
기타훈련 비용	소 계					675,000
	재해보험료	보험종류	15,000	30	1개월	450,000
	기타훈련비용	다과, 문구비 등				225,000
직접비 합계						58,419,375
인건비	소 계					2,296,875
	인건비	윤관리 외 2명	2,552	900시간		2,296,875
홍보비	소 계					3,500,000
	홍보비					3,500,000
운영지원비	소 계					3,127,500
	출장비	관내 외 출장비	50,000	10회		500,000
	공공요금	공과금 등				1,307,500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용 등	300,000	2개월		600,000
	회의비	회의장사용료 등	360,000	2회		720,000
기타간접 비용	소 계					7,185,875
	기타간접비용					7,185,875
간접비 합계						16,110,250
훈련비 총계						74,529,625

참고3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프로젝트관리	5,580	7,254
		02.해외관리	5,580	7,254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경영기획	7,410	9,633
		02.홍보·광고	7,080	9,204
		03.마케팅	6,740	8,762
	02. 총무·인사	01.총무	6,990	9,087
		02.인사·조직	8,510	11,063
		03.일반사무	6,000	7,800
	03. 재무·회계	01.재무	6,960	9,048
		02.회계	6,560	8,528
	04. 생산·품질관리	01.생산관리	6,620	8,606
		02.품질관리	7,170	9,321
		03.물류무역관리	6,620	8,606
03. 금융·보험	01. 금융	01.금융영업	6,360	8,268
		02.금융상품개발	6,360	8,268
		03.신용분석	6,470	8,411
		04.자산운용	6,360	8,268
		05.금융영업지원	6,360	8,268
		06.증권·외환	6,620	8,606
	02. 보험	01.보험상품개발	7,440	9,672
		02.보험영업·계약	6,920	8,996
		03.손해사정	6,360	8,268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1. 학교교육	01.학교교육	6,160	8,008
	02. 평생교육	01.평생교육	6,170	8,021
		02.평생교육운영	6,430	8,359
	03. 직업교육	01.직업교육	6,590	8,567
		02.이러닝	6,510	8,463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1.법무	6,690	8,697
		02.지식재산관리	6,660	8,658
	02. 소방방재	01.소방	6,410	8,333
		02.방재	6,410	8,333
		03.스마트재난관리	6,410	8,333
06. 보건·의료	01. 보건	01.의료기술지원	4,520	5,876
		02.보건지원	5,550	7,215
		03.약무	5,530	7,189
	02. 의료	01.임상의학	6,970	9,061
		02.간호	5,780	7,514
		03.기초의학	6,170	8,021
		04.임상지원	5,960	7,748
07. 사회복지·종교	01. 사회복지	01.사회복지정책	6,460	8,398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2. 상담	02.사회복지서비스	6,620	8,606
		01.직업상담서비스	6,460	8,398
		02.청소년지도	6,460	8,398
		03.심리상담	6,460	8,398
	03. 보육	01.보육	6,460	8,398
08.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01. 문화·예술	01.문화예술경영	6,440	8,372
		02.실용예술	6,680	8,684
		03.공연예술	6,460	8,398
		04.문화재관리	6,330	8,229
	02. 디자인	01.디자인	5,620	7,306
	03. 문화콘텐츠	01.문화콘텐츠기획	7,000	9,100
		02.문화콘텐츠제작	6,240	8,112
		03.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30	8,879
		04.영상제작	6,330	8,229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자동차운전·운송	8,150	10,595
	02. 철도운전·운송	01.철도운전운영	7,150	9,295
		02.철도시설유지보수	7,150	9,295
	03. 선박운전·운송	01.선박운항	8,150	10,595
		02.검수·검량	7,150	9,295
	04. 항공운전·운송	01.항공기조종운송	7,150	9,295
		02.항공운항	7,150	9,295
		03.항행안전시설	7,150	9,295
10. 영업판매	01. 영업	01.일반·해외영업	7,390	9,607
	02. 부동산	01.부동산컨설팅	6,960	9,048
		02.부동산관리	6,620	8,606
		03.부동산중개	6,620	8,606
		04.감정평가	6,620	8,606
	03. 판매	01.e-비즈니스	6,910	8,983
		02.일반판매	6,770	8,801
		03.상품중개·경매	6,840	8,892
11. 경비·청소	01. 경비	01.경비·경호	6,620	8,606
	02. 청소	01.청소	6,620	8,606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01. 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6,470	8,411
	02. 결혼·장례	01.결혼서비스	6,900	8,970
		02.장례서비스	6,900	8,970
	03. 관광·레저	01.여행서비스	6,900	8,970
		02.숙박서비스	7,890	10,257
		03.컨벤션	6,900	8,970
		04.관광레저서비스	6,900	8,970
	04. 스포츠	01.스포츠용품	6,900	8,970
		02.스포츠시설	6,900	8,970
		03.스포츠경기·지도	6,900	8,970
		04.스포츠마케팅	6,900	8,970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05.레크리에이션	6,900	8,970
		01.음식조리	7,600	9,880
		02.식음료서비스	7,700	10,010
		03.외식경영	7,660	9,958
14. 건설	01. 건설공사관리	01.건설시공전관리	7,210	9,373
		02.건설시공관리	7,210	9,373
		03.건설시공후관리	7,350	9,555
		04.스마트건설관리	7,260	9,438
	02. 토목	01.토목설계·감리	7,530	9,789
		02.토목시공	7,590	9,867
		03.측량·지리정보개발	6,820	8,866
	03. 건축	01.건축설계·감리	6,820	8,866
		02.건축시공	6,820	8,866
		03.건축설비설계·시공	6,820	8,866
	04. 플랜트	01.플랜트설계·감리	6,820	8,866
		02.플랜트시공	6,820	8,866
		03.플랜트사업관리	6,820	8,866
	05. 조경	01.조경	6,820	8,866
	06. 도시·교통	01.국토·도시계획	6,820	8,866
		02.교통계획·설계	6,820	8,866
		03.주거서비스	6,820	8,866
		04.지능형교통	6,820	8,866
	07. 건설기계운전·정비	01.토공기계운전	7,260	9,438
		02.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60	9,308
		03.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60	9,308
		04.적재기계운전	7,160	9,308
		05.양중기계운전	7,330	9,529
		06.건설기계정비	7,330	9,529
	08. 해양자원	01.해양환경조사	6,820	8,866
		02.해양환경관리	6,820	8,866
		03.해양플랜트설계·설치·운용	6,820	8,866
		04.해양자원개발·관리	7,330	9,529
		05.잠수	6,820	8,866
15. 기계	01. 기계설계	01.설계기획	6,530	8,489
		02.기계설계	6,530	8,489
	02. 기계가공	01.절삭가공	6,530	8,489
		02.특수가공	6,530	8,489
	03. 기계조립·관리	01.기계조립	6,530	8,489
		02.기계생산관리	6,530	8,489
	04. 기계품질관리	01.기계품질관리	6,530	8,489
	05. 기계장치설치	01.기계장비설치·정비	6,880	8,944
		02.냉동공조설비	7,440	9,672
		03.이륜차정비	7,160	9,308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6. 자동차	01.자동차설계	6,530	8,489
		02.자동차제작	6,530	8,489
		03.자동차정비	6,530	8,489
		04.자동차정비관리	6,530	8,489
		05.자동차관리	6,530	8,489
	07. 철도차량제작	01.철도차량설계·제작	6,530	8,489
		02.철도차량유지보수	6,530	8,489
	08. 조선	01.선박설계	6,530	8,489
		02.선체건조	6,530	8,489
		03.선박의장생산	6,530	8,489
		04.선박품질관리	6,530	8,489
		05.선박생산관리	6,530	8,489
		06.시운전	6,530	8,489
		07.선박정비	6,530	8,489
		08.레저선박	6,530	8,489
	09. 항공기제작	01.항공기설계	7,240	9,412
		02.항공기제작	7,120	9,256
		03.항공기정비	6,560	8,528
		04.항공장비관리	7,400	9,620
	10. 금형	00.금형(공통)	6,530	8,489
		01.사출금형	6,530	8,489
		02.프레스금형	6,530	8,489
		03.다이캐스팅금형	6,530	8,489
	1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01.스마트공장(smartfactory)설계	6,530	8,489
		02.스마트공장(smartfactory)설치	6,530	8,489
		03.스마트공장(smartfactory) 운영관리	6,530	8,489
16. 재료	01. 금속재료	01.금속엔지니어링	7,250	9,425
		02.금속재료제조	7,250	9,425
		03.금속가공	7,250	9,425
		04.표면처리	7,250	9,425
		05.용접	7,250	9,425
		06.비철금속재료제조	7,250	9,425
	02. 세라믹재료	00.세라믹재료공통	7,250	9,425
		03.소성·소결세라믹제조	7,250	9,425
		04.용융세라믹제조	7,250	9,425
		05.탄소재료제조	7,250	9,425
17. 화학·바이오	01. 화학·바이오 공통	01.화학물질·품질관리	6,620	8,606
		02.화학공정관리	6,620	8,606
		03.화학제품연구개발	6,620	8,606
	02. 석유·기초 화학물	00.석유화학공통	6,620	8,606
		01.석유천연가스	7,000	9,100
		02.기초유기화학물	6,620	8,606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정밀화학	03.기초무기화학물	6,620	8,606
		00.정밀화학공통	6,620	8,606
		01.비료농약	6,760	8,788
		02.기능성정밀화학	7,000	9,100
		06.의약품	6,620	8,606
		07.화장품	6,620	8,606
	04. 플라스틱, 고무	01.플라스틱	7,000	9,100
		02. 고무	7,000	9,100
	05. 바이오	01. 바이오의약	7,000	9,100
		02. 바이오화학	7,000	9,100
		03. 바이오기술	6,620	8,606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01.섬유생산	6,620	8,606
		02.섬유가공	6,620	8,606
		03.섬유생산관리	6,620	8,606
	02. 패션	01.패션제품기획	6,620	8,606
		02.패션제품생산	6,620	8,606
		03.패션제품유통	6,620	8,606
		04.신발개발·생산	7,820	10,166
	03. 의복관리	01.세탁·수선	6,620	8,606
19. 전기·전자	01. 전기	01.발전설비설계	9,000	11,700
		02.발전설비운영	6,850	8,905
		03.송배전설비	8,970	11,661
		04.지능형전력망설비	6,850	8,905
		05.전기기기제작	6,850	8,905
		06.전기설비설계·감리	6,850	8,905
		07.전기공사	6,850	8,905
		08.전기자동제어	6,850	8,905
		09.전기철도	6,850	8,905
		10.철도신호제어	6,850	8,905
		11.초임계CO ₂ 발전	6,850	8,905
		12.전기저장장치	6,850	8,905
		13.미래형전기시스템	6,850	8,905
		14.전지	6,850	8,905
	02. 전자기기일반	01.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50	9,815
		02.전자부품기획·생산	6,850	8,905
		03.전자제품고객지원	7,300	9,490
	03. 전자기기개발	01.가전기기개발	6,850	8,905
		02.산업용전자기기개발	6,850	8,905
		03.정보통신기기개발	6,850	8,905
		04.전자응용기기개발	6,850	8,905
		05.전자부품개발	6,850	8,905
		06.반도체개발	6,850	8,905
		07.디스플레이개발	6,850	8,905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8.로봇개발	6,850	8,905
		09.의료장비제조	6,850	8,905
		10.광기술개발	6,850	8,905
		11.3D프린터개발	6,850	8,905
		12.가상훈련시스템개발	6,850	8,905
		13.착용형스마트기기	6,850	8,905
		14.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6,850	8,905
		15.스마트팜개발	6,850	8,905
		16.OLED개발	6,850	8,905
		17.커넥티드카개발	6,850	8,905
		18.자율주행개발	6,850	8,905
		19.원격시스템개발	6,850	8,905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1.정보기술전략·계획	7,330	9,529
		02.정보기술개발	6,620	8,606
		03.정보기술운영	6,620	8,606
		04.정보기술관리	6,620	8,606
		05.정보기술영업	6,620	8,606
		06.정보보호	6,620	8,606
		07.인공지능	6,620	8,606
		08.블록체인	6,620	8,606
		09.스마트물류	6,620	8,606
		10.디지털트윈	6,620	8,606
		11.개인정보보호	6,700	8,710
	02. 통신기술	01.유선통신구축	6,620	8,606
		02.무선통신구축	6,620	8,606
		03.통신서비스	6,620	8,606
		04.실감형콘텐츠제작	6,620	8,606
	03. 방송기술	01.방송제작기술	6,620	8,606
		02.방송플랫폼기술	9,610	12,493
		03.방송서비스	6,620	8,606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식품가공	9,830	12,779
		02.식품저장	7,180	9,334
		03.식품유통	7,180	9,334
	02. 제과·제빵·떡제조	01.제과·제빵·떡제조	6,800	8,840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1. 인쇄·출판	01.출판	6,920	8,996
		02.인쇄	6,920	8,996
	02. 공예	01.공예	7,980	10,374
		02.귀금속·보석	7,820	10,166
23. 환경·에너지·안전	01. 산업환경	01.수질관리	8,500	11,050
		02.대기관리	8,760	11,388
		03.폐기물관리	8,790	11,427
		04.소음진동관리	8,960	11,648

NCS직 종			훈련지원 단가 (단위:원)	130%기준 (단위:원)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05.토양·지하수관리	8,980	11,674
	02. 환경보건	01.환경보건관리	9,130	11,869
	03. 자연환경	01.생태복원·관리	7,540	9,802
	04. 환경서비스	01.환경경영	8,440	10,972
		02.환경평가	8,480	11,024
	05. 에너지·자원	01.광산조사·탐사	9,920	12,896
		02.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70	12,051
		03.광산환경관리	6,740	8,762
		04.광산보안	6,620	8,606
		05.재생에너지	7,170	9,321
		06.에너지관리	7,350	9,555
		07.신에너지	6,620	8,606
	06. 산업안전보건	01.산업안전관리	6,620	8,606
		02.산업보건관리	7,890	10,257
		03.비파괴검사	6,620	8,606
24. 농림어업	01. 농업	01.작물재배	7,000	9,100
		02.종자생산·유통	7,680	9,984
		03.농촌개발	8,590	11,167
		04.화훼장식	7,980	10,374
	02. 축산	01.축산자원개발	6,620	8,606
		02.사육관리	6,620	8,606
	03. 임업	01.산림자원조성	7,100	9,230
		02.산림관리	8,720	11,336
		03.임산물생산·가공	8,750	11,375
	04. 수산	01.어업	6,620	8,606
		02.양식	6,620	8,606
		03.수산자원관리	6,620	8,606
04.어촌개발		8,260	10,738	

수준	개 념
8수준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경력)수준7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경력)수준6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6수준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수준5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5수준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4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4수준	-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3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2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2수준	-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1에서 6-12개월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1수준	-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